

여수 응천 마린파크 애시앙 2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사랑으로

(주)부영주택

여수 응천 마린파크 에시앙 2단지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2.27)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여수시, 여수응천 택지지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비과밀억제권역이며, 본 주택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해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12.27)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여수시 거주자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타시군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타시군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2019.11.01.개정),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일반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 모집공고 승인분 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단, 미성년자 3명 이상) 최저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합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할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2017.10.18.)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4항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본 주택은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는 가점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을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로 선정합니다.
- 2019.1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당첨자 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당첨자는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에 해당)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홍보홈페이지(<http://marineparkaesiang.sarangeuro.co.kr>)를 운영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홍보홈페이지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marineparkaesiang.sarangeuro.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이 적용 되어, 동법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2020.02.21.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자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1월 6일(월)	1월 7일(화)	1월 8일(수)	1월 15일(수)	1월 29일(수) ~ 1월 31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www.ap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은 pc에서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홍보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자격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허가민원과 - 제2019-76968호 (2019.12.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40번지 (5-2블럭)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15~25층 8개동 총 4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특별공급 총 186세대포함 (기관추천특별공급 43세대, 다자녀특별공급 43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88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2세대)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m ²)					세대별 대지비분 (m ²)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 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등)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2019- 001145	01	84.9480A	84.9480	24.2636	109.2116	57.1015	166.3131	50.6346	348	34	34	69	10	147	201	12
		02	84.9596B	84.9596	23.8232	108.7828	57.1095	165.8923	50.6415	50	5	5	10	1	21	29	2
		03	84.8400C	84.8400	23.9240	108.7640	57.0290	165.7930	50.5702	48	4	4	9	1	18	30	2
	합 계									446	43	43	88	12	186	260	1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금액-원)

주택형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1차(15%) 20.06.30	2차(15%) 20.12.31	3차(15%) 21.07.30	4차(15%) 21.12.31	입주지정일
84.9480A	11층이상	192	40,648,343	248,351,657	289,000,000	28,90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86,700,000
	5~10층	96	40,648,343	243,351,657	284,000,000	28,4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85,200,000
	4층	16	40,648,343	237,351,657	278,000,000	27,8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83,400,000
	3층	16	40,648,343	230,351,657	271,000,000	27,10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81,300,000
	2층	16	40,648,343	223,351,657	264,000,000	26,4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79,200,000
	1층	12	40,648,343	218,351,657	259,000,000	25,90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77,700,000
84.9596B	11층이상	30	40,653,882	248,346,118	289,000,000	28,90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86,700,000
	5~10층	12	40,653,882	243,346,118	284,000,000	28,4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85,200,000
	4층	2	40,653,882	237,346,118	278,000,000	27,8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83,400,000
	3층	2	40,653,882	230,346,118	271,000,000	27,10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81,300,000
	2층	2	40,653,882	223,346,118	264,000,000	26,4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79,200,000
	1층	2	40,653,882	218,346,118	259,000,000	25,90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77,700,000
84.8400C	11층이상	28	40,596,644	248,403,356	289,000,000	28,90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86,700,000
	5~10층	12	40,596,644	243,403,356	284,000,000	28,4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85,200,000
	4층	2	40,596,644	237,403,356	278,000,000	27,8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83,400,000
	3층	2	40,596,644	230,403,356	271,000,000	27,10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81,300,000
	2층	2	40,596,644	223,403,356	264,000,000	26,4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79,200,000
	1층	2	40,596,644	218,403,356	259,000,000	25,90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77,700,000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대한 선납할인은 불가하므로 납부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사용검사 또는 입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잔금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본 계약체결 후 은행과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입주예정자는 입주 시 단지관리운영을 위한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홍보관 분양사무실로 확인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9480A	84.9596B	84.8400C
약식표기	84A	84B	84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 공급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 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p>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서울/부산</th> <th>기타 광역시</th> <th>기타 시/군</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 여부 확인대상자: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상기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2019.11.01.개정),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 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 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후 동시에 당첨시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서약서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단위 : m²,세대)

구 분		84.9480A	84.9596B	84.8400C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처 추천	11 (4)	2 (1)	2 (1)	15 (6)	
	장기복무제대군인	3 (1)	0	0	3 (1)	
	장애인	10 (4)	2 (1)	1	13 (5)	
	중소기업근로자	10 (4)	1	1	12 (4)	
	기관추천 특별공급 소계	34 (13)	5 (2)	4 (1)	43 (16)	
다자녀 특별공급	-	34	5	4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52	8	7	67
		일반공급(25%)	17	2	2	2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0	1	1	12	
합 계		147	21	18	18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0는 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

■ 신청접수방법 : 해당 청약신청일에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가.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청(복지과)
- 나. 장애인 : 지자체(장애인복지과)
- 다.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청
- 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모집공고일 2019.2.25.이후 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과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자격별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급년도 전직자 및 신규취업자	• 급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서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금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비치)	• 접수장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인 여수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

거주기간(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 반 공 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신청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여수시) 및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점수가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여수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여수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함. (※ 유주택자도 가능)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① 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함 (작은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함으로 변경 불필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① 기타 지역(지방)에서 여수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입시 청약접수 가능함.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 신청 가능(감액사유시 변경 불필요)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 분	주택형	순 위	신 청 자 격
민영주택	85㎡이하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가입 후 경과기간 및 월납입금 납입 횟수와 상관없음)로써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민영주택의 청약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기타시 / 군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12.29.)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든 청약이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수 산정 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 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별표1]의 1

구 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계부 또는 계모(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소유한 경우 역시 그 배우자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p>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한다.</p>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내 용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가점제 대상자 제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2년이내에 가점제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017.10.18.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 거주신청자가 전라남도 타시군 및 광주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건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

	<p>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중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의 공급방법은 선정된 예비당첨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참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 2)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27)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 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위에 따라 통보받은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제3자 대리신청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3.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여주시/ 광주광역시 및	2020.01.06.(월) 08:00~17:3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홈페이지 (www.ap2you.com)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전라남도	2020.01.07.(화) 08:00~17:3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2순위		2020.01.08.(수)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첨자 발표, 사전 자격 검증, 계약 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사전 자격 검증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0.01.15.(수)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 ※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0.01.16.(목) ~ 19(일) (4일간, 10:00~16:00) • 장소 : 당사 모델하우스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2 (학동 71-2번지) 당사 여천 M/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0.01.29.(수) ~ 01.31(금) (3일간, 10:00~16:00) • 장소 : 당사 모델하우스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2 (학동 71-2번지) 당사 여천 M/H)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홍보관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당사규정에 따라 임의 분양함.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전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사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당첨자 검수는 당첨자 계약체결 시 부적격 서류 검수 및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리세대 당첨자의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일정에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자격검증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	• 당사 홍보관에 비치(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될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미혼 인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재직증명서	본인 및	•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며, 만19세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주

			만19세이상 세대원	성원 전원이 각각 필요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세대원	• 접수 장소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구성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각각 필요(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자녀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청약자	• 대리신청시(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 - 위임장은 접수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시는 제출생략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대리인	•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도장	대리인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서비스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조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1.15. ~ 2020.01.24.(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 2017.6.15.부터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20.01.15.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6.15.부터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5. 계약 체결

■ 특별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	• 당사 홍보관에 비치(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될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미혼 인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청약통장 가입(순위)확인서	본인	•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 및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제외(그 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출)	
이전기관 종사자	○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이전기관	• 이전기관 장 날인 필요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재직증명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며, 만19세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필요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세대원	• 접수 장소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구성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각각 필요(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자녀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서		○	위임장	청약자	• 대리신청시(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 - 위임장은 접수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시는 제출생략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도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27)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함.

※ 상기서류 외에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일반공급 당첨자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계약시 구비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공 통	○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인감도장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1통 포함),
		○		• 주민등록초본 1통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추가사항 참조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저층 우선배정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중 신분확인서류로 같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사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홍보관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27)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계약금은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상기 구비서류 외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청약은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준공도서 및 실제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잔금기한 경과시 연체료 부과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101-655757	(주)부영주택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입금방법 : 101동 101호 홍길동 당첨자의 경우 상기 계좌 입금시 입금자명 홍길동101-101으로 입금 바람)
- ※ 상기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떤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오니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람.
-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에 따라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기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에,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대출 안내**

- 계약금 완납 후 당사의 알선으로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이하 “중도금 대출 알선”이라 한다)계약자는 당사가 지정한 일자에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출금융기관이 공급계약서 전문에 명시된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위임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대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인지대, 보증수수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의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당사와 무관한 대출 결격사유(신용불량, 타은행 대출, 대출한도초과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또는 예상금액 보다 대출금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계약자는 당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할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 중도금 대출 알선에 따른 공급대금의 대출은 중도금 대출한도 내에서 입주지정일 개시 전일까지로 하나, 당사는 이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을 보증하지 않는다.
- 본 계약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에 의해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당사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입주시 당사가 대신 납부한 상환이자 전부를 공급대금과 별도로 계약자가 당사에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계약임.(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이후라도 신용불량이나 타 아파트의 분양중도금 대출 등의 귀책사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취급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신청 없이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이자를 대신하는 어떠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은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또는 당사가 허용할 경우 동 대출금에 대하여 해당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입주증을 받은 후에만 입주할 수 있다. 단, 입주시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 전액이 승계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입주지정일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금융기관 앞으로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권을 설정해 주어야하며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은 이를 강제집행 할 수 있다.
- 잔금 및 중도금 대출관련 내용은 관련정책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주체를 통한 집단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 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2022년 04월**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 2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 체력단련시설 1개소)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6.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및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7,600,000	760,000		6,840,000	
84B	6,800,000	680,000		6,120,000	
84C	6,800,000	680,000		6,120,000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101-655757	(주)부영주택

- 발코니확장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입금방법 : 101동 101호 홍길동 당점자의 경우 상기 계좌 입금시 입금자명 홍길동101-101으로 입금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시 발코니 외부에는 사시가 설치 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시 전기오븐 및 행주도마 살균기, 주방텔레비전, 냄비뚜껑걸이, 음식물탈수기, 절수페달(센서형), 코너망장, 전동빨래건조대, 부부욕실 일체형비데, 불박이장 및 시스템가구 등이 제공되며 비확장선택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음(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가타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사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기구를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 하시면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희통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반침장 설치시 가구와 접한 측면, 후면, 천정 및 하부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시공되지 않는 마감재의 비용은 발코니확장 금액 책정시 반영되어 있음.

시스템 에어컨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금액

(단위 : m²,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제조사	설치위치 및 대수 선택			설치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 금(90%)
84ABC	삼성전자	선택①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5,100,000	510,000	4,590,000
		선택②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000,000	600,000	5,400,000
	LG전자	선택①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5,100,000	510,000	4,590,000
		선택②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000,000	600,000	5,400,000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비 납부계획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금액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101-655757	(주)부영주택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입금방법 : 101동 101호 홍길동 당첨자의 경우 상기 계좌 입금시 입금자명 홍길동101-101으로 입금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시스템에어컨 시공 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가동시에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미신청세대는 기본제공(3실)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사설(콘센트)을 설치하고,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3실)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사설 설치공사(콘센트)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사설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 통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	마루, 타일, 걸레받이, 굽도리,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난방배관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 우수선홈통, 수공간 바닥방수(보호몰탈 시공)
벽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마감 일체(타일 등), 아트월(타일, 판넬, 도장 등 일체 포함)	석고보드 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 벽 도장, GAS배관

천장	천정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정포함), 반자돌림(몰딩 포함)	천정틀 위 석고보드, 콘크리트 먼처리(해당 부위), 커튼박스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직부등, 매입등, 센서등 일체)	배관배선,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대기전력차단기구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액세서리류,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타일, 욕실선반, 욕실 인테리어(젠다이어,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 일체)	조적, 방수, 미장, 전기설비 배관/배선 설비배관(급,배수 등 매립배관), 배기덕트욕실천정(배기팬 포함)
주방	본주방 및 다용도실 주방가구 및 가전류 일체(가스쿡탑 등),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류), 벽타일, 수전류, 렌지후드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등 매립배관 및 가스배관 단부 보호처리), 주방배기덕트, 소방검사 관련시설
창호	목창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등 일체) 및 욕실문,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포함), 디지털도어록, 금속도어	각실 내부 PL창호, 세대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대피공간 방화문
가구 및 기타	가구 일체 (현관가구, 주방가구, 침실가구, 욕실가구, 시스템 선반 등)	설비배관(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월패드, 분전반, 통신 단자함

● 마이너스 옵션 금액(지하층건축비100%, 지상층건축비85%)

(단위: 원)

주택형	84A	84B	84C
금액	27,004,000	26,923,000	26,919,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금액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및 관련업무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사용이 제한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부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추후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 예정임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일부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적 작동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주방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등에 관한시행지침」 제3조제4항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함.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제3항에 의거 여수시 구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시 하자책임기간·담보방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추후 입주자에게 알릴 예정임.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사, 시공사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따라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7. 유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

- 단지 부출입구에 건강보험공단이 위치해 있어 기관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으로 인해 사업지 출입시 민원발생할수 있으니 이 로인한 민원을 시행사나 시공사에 이의제기 할수없음
- 9차 단지 진출입구는 2개소로 계획되어 있음.
- 901, 902, 904, 908동 북서측에는 30M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북동측(901, 902, 903, 905, 906동 인접)에 경관녹지 및 3M 소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행인으로 인한 소 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본 단지 북동측(901, 902, 903, 905, 906동 인접)은 택지조성시 사면마감이 사석붙임이나 낙석방지를 위한 그물망 덮기로 되어 있으며 입주 후 그로인해 발생할수 있는 미관불량 및 일부 낙석은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 9차 904, 908동 인접부에 8M이상의 방음벽설치 예정이니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준공 시 소음 측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906, 907, 908동 인접 부지에 구거가 있으며, 도면상 표현된 구거를 건너는 인도교는 관계기관 협의시(점용관련) 해당 시설 향 후 변경될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 인자내용과 본인 청약내용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 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 면적(m²) ÷ 3.3058
- 아파트 외관 색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의 당첨자는 향후 타 주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저해시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사전에 반드시 통학거리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에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건물의 외장색채는 건축, 디자인팀과의 협의 완료 후 시공예정이며 이로인해 분양 시 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층·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하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는 응동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응동초 개교예정은 22년 3월이며 해당 교육청 정책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교전 입주시 인근초등학교로 임시 수용 방안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 변동 될 수 있음.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광역 및 주변 개발계획은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발세부내용, 준공시기, 명칭 등은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도, 홍보물 관련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 주변을 꼭 방문하여 주변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주변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 · 외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 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층분이 검토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만약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됨.
- 견본주택내의 조명,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됨.
-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유상옵션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름.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 84㎡ B,C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A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됨.
(사이즈 및 가구류등의 구성은 타입별 구조에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디스플레이 된 주방전열기구 및 청소기 등의 설치 위치에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외부 여건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유치원, 하천, 공원, 녹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1,2단지 동쪽 및 남동쪽 산언덕에 묘지가 부분적으로 산재되어있어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여서로와 응천로에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여서로변 소음 감소를 위한 높이 8m이상의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구거조성은 여수시에서 택지조성시 완료된 구간으로 유지, 보수, 관리 주체와 책임은 여수시에 있으며 시행사 및 시공사와 관계없음
- 북서측 30M 도로변 소음 감소를 위한 높이 8m이상의 방음벽 설치가 일부 계획되어 있으며,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시 소음 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추가 계획될 수 있음.
- 방음벽 설치에 따라 일부세대의 조망 및 일조조건등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분양계약전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대지면적, 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및 도로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휨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은 향후 인·허가, 관계기관협의 및 입주시기에 따라 변경(수종포함)될 수 있음.
- 5-1, 5-2블럭 사업지는 임야 사면에 조성된 관계로 단지 내 옹벽이 다수 설치예정이며 향후 규격, 재질, 위치등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등이 인접한 동은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접동은 차량 진출입시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 동 층층에 제연휨륜, 공용홀 에어컨 등의 D·A(공기 급배기구) 설치되니 해당동의 위치와 기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동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로 인한 저층부 세대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분리수거장 위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수거장의 위치가 구조물 및 조경과 간섭이 있거나 우,오배수 관로와 간섭이 있는 경우 위치가 변경될수 있음
- 각 동의 지상층 및 지하1층 주출입구는 조건에 따라 위치, 구조 형식, 외관 형태, 크기 등이 동 및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출입구는 필로티 계획여부에 따라 지상층 진입이 1개소 또는 2개소 이며, 필로티 천장고는 동별 조건에 따라 상이함.
- 단지 주 진입부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주 진입부에 위치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문주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에 간섭이 생길 수 있음.
- 각 동의 지하층에 제연환풍이 설치되며, 일부 동은 엘리베이터홀에 제연환풍 출입문이 설치됨.
- 지하주차장이 1~2층으로 계획되며, 각 동별 주차장 여건에 따라 해당동 주변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지는 2019.1.16.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승인된 단지로 「주택건설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유효높이는 2.3m로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 합니다.
-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씩 설치되며, 여건에 따라 해당동이 아닌 인접동에 설치될수 있으니 계약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
- 단지경계부에 일부 조경석 이 설치될 수 있음.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 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 분진에 의한 생활권 등의 침해할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블럭식포함)이 설치될 수 있음.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상가, 커뮤니티의 외관 디자인(입면, 벽체 마감 등) 및 외부 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 간판 위치, 조경 문주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옥상구조물,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 석재의 적용범위 및 층수는 각 동별 및 부위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건축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배치 계획상 탐상형과 판상형이 혼합되어 일부 동은 일조권 침해 및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공공보행통로,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분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옹벽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시공여건,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사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화장실 환기시설(벤츄레이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빛의 산란, 전자파,악취등에 의해 일부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동 저층부 세대는 이동통신 중계기, 가로등, 단지내 주차장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빛의 산란, 전자파, 주차 차량 배기가스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홍보물의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저층부 세대는 세대 전,후면에 D.A가 위치할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경로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추가설치 될 수 있음.
- 단지 내 세대에서의 비상탈출을 위해 지층 세대 전면에 에어매트 설치구간이 계획되어 있어 조정 식재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계승기(최하층) 및 에어컨 가동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단지내 지상에 지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분양계약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고,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주차장에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하오니 분양계약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음.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경차전용 주차면은 차량용 카스토퍼가 일반 주차면보다 후면에 위치하여 경차 이외의 차량이 주차시 차량후면과 주차장 벽체의 충돌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주차장홀 진입 동선 및 자동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각동별 진입가능 층수가 상이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동하부 PIT 구획, 높이 및 면적, 벽체의 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설치위치에 따라 각동별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분양계약전 확인후 계약하시고,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홀 및 복도 폭은 마감재 설치로 인하여 기준층보다 축소될 수 있음.
- 이사 시 사다리차 진입불가 구간, 조정 보호 등의 이유로 사다리차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에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배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내 유의사항

- 본 아파트 세대의 기준층 천장 높이는 2,300mm임.
-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현관 및 발코니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채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저층세대 펜트리 외부 창호(PW5)는 외벽 석재 마감으로 인해 다소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됨.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과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은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 및 석재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나누기와 석재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음.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 환기시스템은 기계식 환기가 아닌, 창호에 시공된 자연환기장치를 이용한 자연환기 시스템이니 분양계약시 확인후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에어컨, 위생기구, 액세서리, 수전류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함.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1개소, 침실1, 침실2 각 1개소로 총 3개소 설치되어 있으니 분양계약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는 골조 층고 2,800MM, 마감고 2,300MM로 당사옵션 시스템에어컨이 아닌 입주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가전업체를 통하여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제품 종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분양계약 전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됨.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주택의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1층 세대 하부에 각 동 계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함.

■ 주민공용시설 유의사항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인근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 시설 설치 위치에 따라 각동별 이용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분양계약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인테리어 설계에 따라 평면, 천장 높이 등이 인가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처리 예정임.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준공 후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 결정됨.
- 주민공동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 들은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예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됨.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은 입주 전후 입주인을 위한 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음.
- 공용시설 입면 계획은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세탁용 및 청소용 제외)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을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화장실 내에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특등급
- 홈네트워크건물 : AA

■ 주택분양보증

- 주택분양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분양보증 내용

주택분양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22019-101-0004400호	₩ 88,713,800,000 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분양 보증 약관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웁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 ①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사·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사 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사 등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증회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사등이 주택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 ②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보증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 ③보증회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 ④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 ⑤보증회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

- 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 ⑥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보증회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⑧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보증회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⑨ 분양이행의 경우 보증회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 ⑩ 보증회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 ① 보증회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지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를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 ② 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원래 주택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보증회사가 알린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제8조 (대위 및 구상)

- ①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증회사에 제출하고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③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보증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업주체의 변경
2.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으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보증회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보증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 ①보증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보증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보증회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 ①보증회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서개정 2019. 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개정 2019. 7.25.>
- ② 보증회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정 2019. 7.25.>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제5항 및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등에관한규칙」 제15조 규정에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함.
- 아파트 단지 총 분양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하수 검증은 실시 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천원/VAT 포함)

구분		적용총액	구분		적용총액	구분		적용총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14,049,117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13,960,063	공사비	기계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1,670,690
	기간이자	3,340,415			용접공사				난방설비공사	1,344,884
	필요적 경비	737,423			조적공사	1,390,355			가스설비공사	1,155,747
	그밖의 비용				미장공사	3,402,029			자동제어설비공사	
	계	18,126,955			단열공사	382,345			특수설비공사	
공사비	토목	토공사	1,643,297	방수,방습공사	1,181,804	그밖의공종		공조설비공사		
		흙막이 공사	102,147	목공사	1,459,875			전기설비공사	4,548,131	

비탈면보호공사	가구공사	1,946,498	그 밖의 공사비	정보통신공사	3,986,633		
	옹벽공사	143,854		소방설비공사	3,930,483		
	석축공사	51,073		승강기공사	1,123,234		
	우수, 오수공사	167,690		일반관리비	2,807,488		
	공동구공사	78,312		이윤	1,684,493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503,075		계	72,994,692		
	도로포장공사	380,496		설계비	455,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40,004		감리비	1,922,000		
	정화조시설공사			부대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10,365,246	
	조경공사	709,498			분담금 및 부담금	4,761,500	
	부대시설공사	436,706			보상비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11,702,496	
	건축	공통가설공사		2,033,397	간접비	계	29,206,242
		가시설물공사		994,972		그 밖의 비용	6,406,111
		지정 및 기초공사		2,050,776		합계	126,734,000
		철골공사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618,196	간접비	그 밖의 비용	합계
		급탕설비공사		280,806			
		오수, 배수 설비공사		1,139,068			
가구공사		1,946,498					
금속공사		1,251,321					
지붕 및 흡통공사		417,105					
창호공사		3,123,958					
유리공사		1,390,355					
타일공사		1,876,981					
돌공사		651,730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소방감리
회사명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국나이스기술단	(주)서광이에프
감리금액	₩ 1,344,000,000	₩ 505,000,000	₩ 73,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상호명	(주)부영주택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등록번호	110111 - 4252188

■ 홈페이지 : <http://marineparkaesiang.sarangeuro.co.kr>

■ 홍보관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2 (학동 71-2번지)

■ 분양문의 : ☎ 1577-5533, ☎ 홍보관 061)685-402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홍보관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